

「2025년 경기도 수출기업인의 날」표창 공고

「2025년 경기도 수출기업인의 날」행사를 통한 수출증진과 해외시장 개척 등에 공헌한 수출 중소기업 및 임직원에 대한 표창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수출증진과 해외시장 개척에 공적이 있는 경기도내 수출 중소기업과 유관기관에서는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5. 7. 1.

(사)경기도수출기업협회장

1. 시상시기 : 「2025년 경기도 수출기업인의 날」(12월9일) 행사시 수여
2. 표창대상 : 경기도내 중소기업으로서 우수 수출기업 및 교류협력 활동에 기여한 수출 중소기업 및 유공자 등
3. 선정규모 : 총 70개사

표창분야		표창대상
기업	수출증진분야 (30개사)	- 수출규모가 지속 확대되고 있는 기업 - 수출증가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기업
	수출혁신분야 (20개사)	- 시장개척 모범사례 기업 - 수출을 통한 경영난 극복사례 기업 - 혁신을 통한 수출애로 극복사례 기업 - 수출품목 개발 및 수출 우수사례 기업
	교류협력분야 (10개사)	- 수출기업 교류 활성화 기여기업 - 수출기업 간 상생 협력을 통한 우수사례 기업 - 경기도 및 시·군 사업 참여와 협회 활동 참가 등 적극 협력 추진 기업
기업 및 유공자 임직원 유공자 (10개사)		- 수출 확대 및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체 임직원 - 수출기업 교류 활성화 및 기업지원 공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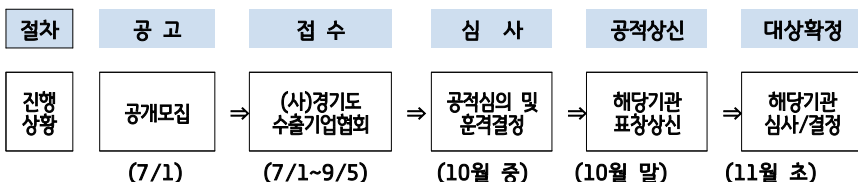
4. 표창훈격 : 총 70 점

(내부) 경기도지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위원장,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경기도수출기업협회장

(외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경기도청중소벤처기업청장, KOTRA사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 표창 훈격은 해당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표창대상자 선정과정



6. 신청 및 접수

가. 공고일자 및 접수기간

- 공고일자 : 2025년 7월 1일(화)
- 접수기간 : 2025년 7월 1일(화) ~ 2025년 9월 5일(금)

나. 접수 방법

- 첨부 신청 양식에 작성
 - * 신청양식은 (사)경기도수출기업협회 홈페이지(<http://www.gea.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도장 날인 후, 한글 원본파일 이메일(gea@gea.or.kr) 송부 및 원본은 별도 등기우편 (9월 5일 소인까지 유효) 송부

7. 제출서류

서 류 명	비 고
1. [서식1]표창추천서(신청서) -기업용(기업대표)	기업신청인 경우 - [서식1] 신청서만 작성
2. [서식2]표창추천서(신청서) -개인용(임직원)	개인(임직원)신청인 경우 - [서식1] [서식2] 모두 작성
3. [서식3]공적조서	
4. [서식4]이력서	
5. [서식5]소속기업현황	
6. [서식6]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7.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개인: 소속기업 사업자등록증
8. 재무제표 2부-기업용	2023년, 2024년 각 1부 총 2부
9. 수출실적증명서 3부	2023년, 2024년, 2025년 1월~6월 3부 ※ 월별 수출실적확인서 발급 직수출, 로컬 등 기타수출 발급 아래표 확인
10. 지방세/ 국세납세 증명서 각 1부	개인기업-대표자(개인명) 2부 (대표자 : 지방세, 국세 각 1부) 법인-기업, 대표자(개인명) 4부 (기업:지방세,국세/대표자:지방세,국세) 개인(임직원)-개인 지방세 국세납세증명서 각 1부
11. 기업의 법위반 사실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첨1 참고 (필수제출)
12. 법위반 사실 여부 약약서 1부	별첨2 참고 (필수제출)

13. 산업재해를 확인서 1부	조회기간 : 2022년 1월~12월 2023년 1월~12월 2024년 1월~12월 (3년 조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 인터넷발급 또는 팩스발급
14.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2부	기준일자 : (총 2부 제출) 2023년 12월 31일~12월 31일 기준 1부 2024년 12월 31일~12월 31일 기준 1부 고용·산재보험토털서비스 (http://totalkcomwel.or.kr) 인터넷 발급
15. 재직증명서 1부(개인용-임직원)	근무경력 3년 이상(기업대표 해당 무)

가. 경기도 법 위반사실 여부 확인방법

IV 납세 부분은 신청기업이 직접 발급하여 사업 신청시 소명자료로 제출(유효기간 이내)해야 하며, I 공정, II 노동, III 환경 분야 법 위반사실 여부 확인 및 조회는 신청이후 경기도 담당 주무부서에서 직접 조회함(아래 표 참고)

적용법률		법위반사실 여부 확인 및 조회
I 공정	① 공정거래법	(소관기관) 공정거래위원회
	② 하도급법 ③ 표시광고법	(서류제출) 공정거래위원회 법위반기업 목록 도에 공유 (조 회) 도 사업담당자 조회 및 확인
II 노동	④ 근로기준법 ⑤ 산업안전보건법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기업소재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지청 (서류제출) 기업소재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지청 법위반사실확인서 등 정보공개 등 신청 발급 (조 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체불사업주명단* 공개 법위반사실 여부 조회(공문서)
		* 공개기준일(매년 8월 31일)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
III 환경	⑥ 폐기물관리법	(소관기관) 기업소재 관할 시군
	⑦ 대기환경보전법	(서류제출) 기업소재 관할 시군 행정처분 내역 및 법위반사실확인서 등 정보공개 등 신청 발급
	⑧ 소음진동관리법	(조 회) 기업소재 관할 시군 법위반사실 여부 조회(공문서)
	⑨ 물환경보전법	
IV 납세	⑩ 국세기본법	(소관기관) 세무서, 기업소재 관할 시군
	⑪ 지방세기본법	(서류제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

나. 수출실적증명서 발급

직수출

1)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

- 회원사

- ① 온라인 : 무역협회 인터넷 증명서 발급센터 이용(webdocu.kita.net)
(www.kita.net → 회원사 → 인터넷증명서서비스발급)

자사실적조회 : www.kita.net → 회원사 → 자사수출입실적조회

- ② 오프라인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부)

- 비회원사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역본부)

2)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

- * <http://trass.kctdi.or.kr/service/pub/introService> 방문
- * 메인화면의 '자사수출입증명신청' 클릭
- * 페이지 하단의 '온라인 실시간 발급 신청하기' 클릭
- * 원하는 기간 설정 후 '조회'버튼 클릭
- * '증명서주문' 버튼 클릭 하여 프린트

로칼 등 기타 수출

주거래 외국환은행이 발행한(다만,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받고 보세지역에 물품 등을 공급한 경우 무역협회에서 발급) '로칼 등 기타 수출실적증명서'

※ 로컬 등 기타수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은행에서 실적 없음을 확인받아 제출(신청시未제출)해야 함

※ 전년도 실적을 반드시 기재하고, Local L/C, 구매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1) Local L/C수출 : Local L/C를 받고 수출업체에 수출물품을 공급한 후 대금으로 거래은행에 입금된 달러금액 (원화인 경우 입금일 매매기준율로 환산)

2) 구매확인서 : 구매확인서를 받고 수출업체에 수출물품을 공급한 후 대금으로 받은 금액(단, 외국환은행에서 확인을 받은 금액에 한하여 달러로 환산)

3) 중계무역 : 수출금액(FOB) - 수입금액(CIF) = 가득액(마진) ⇔ 거래 외국환은행에서 확인발급

4) 위탁가공수출 : 완제품수출금액(거래은행입금액) - (원부자재통관금액 + 현지공장가공임) = 가득액(마진)
⇔ 거래은행에서 확인발급

5) 수탁가공수출 : 완제품(가공품)수출금액 - 원부자재수입금액 = 가득액 ⇔ 거래은행에서 확인발급

6) 기타 : 주한 국제연합군 기타 외국군기관에 대한 물품의 매도,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공장건설에 필요한 물품등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외국으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국내에서 유상으로 물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대금결제통화 불문), 외화를 받고 외항선박(항공기)에 선(기)용품을 공급하거나 급유하는 경우, 철충교역의 보완거래로 외국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국내에서 제조된 물품등을 국가기관에 공급한 경우,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외화획득용 시설·기재를 외국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칭하는 생산자의 수출물품 포장용 골판지 상자의 공급

※ 용역 및 전자적무채물수출

- 경영법무회계엔지니어링디자인 등 용역 및 소프트웨어(솔루션포함), 영화게임애니메이션문화 등 영상물, 음향음성물, 전자서적, 데이터베이스 등 전자적 무채물에 대한 수출실적은 거래은행에 대금이 입금된 이후 정확한 금액을 확인한 다음, 수출확인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무역협회(www.onlinetrade.or.kr 참조)에서 발급 (온라인 수출실적 증명서 발급하여 제출)

※ 외국인 외화영수부 국내수출자 공급물품 수출

-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 그가 지칭하는자가 국내에 있음으로써, 물품등을 보세구역으로 공급하는 경우, 무역협회 본부지역본부 내방 신청 및 발급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발행한 '로칼 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실적증명서'

KTNET의 간접수출실적증명서비스 홈페이지(www.utradehub.or.kr)에 접속, 온라인 신청을 통해 발급 수출실적 합계액을 기재 ("로칼 등 기타 수출" 중에서 '중계무역, 위탁·수탁가공수출' 실적은 가득액(마진)만 기재)

8. 선정발표 : 11월 14일 (금) 예정

9. 접수 및 문의처 : 사단법인 경기도수출기업협회 사무국

[전화] 031)259-6461~3 [이메일] gea@gea.or.kr

[주소] (1622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이의동 906-5)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3층

(사)경기도수출기업협회 사무국

별첨[1] 기업의 범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필수제출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1. 개인 및 기업 수집 정보

기업(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법 위 반 사 실 확 인 서		

2. 개인정보 수집 기관 :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수출기업협회

3.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수집 항목	기업(단체)명, 기업(단체) 사업자등록번호, 기업소재지(주소, 영업소, 생산시설 소재지), 대표자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위반사실확인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 법위반 사실확인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은 당해연도 사업종료시까지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4.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제공목적	기업경영활동 중 발생된 법위반사실 확인
제공항목	기업(단체)명,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제공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위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지방청)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환경부, 관할 시군 환경부서)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위반 ○ (세무서, 시군)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위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5. 기타사항 : 상기 목적 이외에는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 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2025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경기도수출기업협회 귀하

별첨[2] 법위반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필수제출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약약서

1. 개인 및 기업 수집 정보

기업(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2. 법위반 사실 확인 및 유의사항

법위반 여부 사실 관계 확인사항		확인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지방청)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환경부, 관할 시군 환경부서)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세무서, 시군)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법위반사실 확인) 법위반기업 지원제한 기준 고시 관련 법률 위반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유의사항 고지 및 안내	동의	부동의
사업공모일 기준 2년 이내 법위반사실이 없으며 사업자 선정후 법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선정 취소 및 사업비 반환에 동의합니다.	☐	☐
법위반사실에 대해 위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 거짓으로 제출하여 선정된 경우 사업취소 및 사업비 환수, 3년간 이내 도 전체 지원 사업에서 제외됨을 고지 받고 이에 동의합니다.	☐	☐

공고문 및 신청 유의사항 등 관련내용을 확인 하였으며,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 중 허위기재, 증빙불가, 결격사유 등이 있는 경우 선정 취소 및 관련법령에 처벌 받을 수 있으며, 향후 경기도 지원 사업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1월 1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경기도수출기업협회 귀하

별첨[3] 이의 및 구제 신청서

이의 및 구제 신청서			
1. 개인 및 기업 수집 정보			
기업(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2. 신청요지			
관련 법령			
법위반 처분내용 (처분기관)			
법위반사실 개요 (경위 및 사실관계)			
3. 소명내용			
4. 증빙서류 : 법위반처분서류 및 소명자료(증빙)			
경기도 수출프론티어기업 및 표창 대상자 선정평가시 법위반처분사실에 따른 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경기도수출기업협회 귀하			